

###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국제사회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의 수립은 한국 사회의 인권발전에 큰 획을 긋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 계획이 정부에 의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위원회는 인권NAP의 수립과정과 그 이행과정에서 정부의 자문역할을 할 것이며 그 내용과 이행절차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국내에서 완전하게 이행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위원회는 인권조약이 요구하는 인권수준과 우리의 제도 및 현실이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위원회와 관련기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권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 2.1.3.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국제적 수준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을 심도 있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패턴과 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맞는 제도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관행의 개선은 일회적인 정책권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관심과 실천 가능한 대안의 제시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 세부목표

###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는 매일 같이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위원회는 살아 있는 인권보호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실천계획

### 2.2.1. 인권현안 발굴 체계 확립

수다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것에 위원회가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러한 문제에 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위원회의 역할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위원회는 그 내에 인권현안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으로써 위원회가 인권현안에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위원회의 인권정책기능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위원회 바깥의 요구에 의한 인권정책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인권정책의 수요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굴하는 능력과 대응체계가 요구된다.

### 2.2.3.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위원회가 특정한 인권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인권사건이 사법부의 심리 중에 있을 때 위원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인권위법에 명시된 이 소중한 기능을 통해 위원회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인권의 가

치를 우리의 사법부에 전달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제·개정 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본적인 임무이므로 이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 세부목표

### 2.3. 국제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인권의 실질적 개선은 제도적 정비로 나타난다. 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인권제도의 구축은 결국 국내법의 정비로 귀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실천계획

### 2.3.1.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주는 규범에만 만족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의 형성에도 선도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2.3.2.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위원회는 우리가 가입한 주요 국제조약이 얼마나 국내에서 실천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날 것이며, 우리의 인권정책의 방향이 들어날 것이다.

### 2.3.3. 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국제인권기준에 우리의 국내법령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련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연대가 필요하고 이들의 연구를 한 곳에 모을 시스템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이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새  
3.1.  
위  
당  
다.  
사  
적

###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 필터링 기능 강화

3.1.2. 사건처리 체계 정비

3.1.3.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 **3.2. 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3.2.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3.2.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실시

3.2.3. 진정한 만족도 제고

#### **3.3.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3.1.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3.3.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3.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

3.3.4.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

### **세부목표**

####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위원회가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차별성 있는 권리구제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빠르고, 쉽고, 값싸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의 권리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인권침해 사건은 유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합한 구제방법을

개발, 적용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값싼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위원회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호, 증진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효율적이며 상생적 갈등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리구제의 영향과 효과가 최대한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3.1.1. 필터링 기능 강화

진정사건에 대해 전방위적인 상담 및 기초조사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관문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획조사 역량을 집중, 권리구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에서 진정을 접수한 후 사건 유형을 분류하여 조사국으로 송부하기 이전 단계에서 명백한 각하사건의 경우 접수를 배제하거나 신속하게 각하를 결정, 조사관별로 적정 사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3.1.2. 사건처리 체계 정비

사건의 접수 이후 기초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접수된 권리구제 사안에 대하여 가

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처리한 다양한 유형의 진정사건들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 조사구제 매뉴얼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3.1.3.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 및 실시

차별사건 및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권리구제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사법적, 재판적 분쟁해결방식에서 벗어난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개발하고 조직적 역량을 축적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특히 사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조정, 중재 양식은 조정 본연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외국 NI들의 모델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개발하도록 한다.

## 세부목표

### 3.2. 인권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사 진행 및 실질적인 인용률 제고로 진정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진정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3.2.1.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그동안 위원회는 제기되는 진정사건 처리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나치게 교정시설 수용자, 형사절차 과정에 있는 피의자들의 인권문제에 편중되게 위원회 역량이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제2기 인권위원회에 서는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정신보건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등에 인력을 배분하여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3.2.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개발 실시

다른 민원처리기관과는 달리 국민 인권 보호의 최 일선에 서야 할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상처와 분노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다 인권친화적인 조사와 권리구제 기법 등을 개발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공감적 경청 등의 상담기법을 활용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의 회복과 더불어 심리적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관료적 국가기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한 권리구제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다층적인 기법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3.2.3. 진정인 만족도 제고

진정사건의 지연처리는 진정인의 주요 불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기관에게도 장기간 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경미한 인권침해 사건, 빈번하게 반복되는 유사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현장해결형 조사 시스템을 대폭 도



입하여 기간 단축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진정한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사건처리에 급급하여 진정 당사자들에게 다소 불친절하고, 권위적 태도를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경청하고 헌신하는 조사태도를 지향하여 진정 당사자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조사 관행을 정립하고, 진정 경과 인터넷 안내 시스템을 제공하여 진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 덧붙여, 사건처리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여 면밀한 평가·환류를 통한 진정한 만족도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세부목표

### 3.3.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개별 진정사건 처리만으로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경 등 어느 정도 진정사건 처리 경험을 통하여 인권침해 관련 구조적 문제가 파악된 분야는 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를 활성화 하여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 관행, 제도,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사무소, 지역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인권침해 현장에서 관련 종사자들 및 수용자들과의 대화, 교육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3.3.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

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권조사, 방문조사, 실태조사 실시권한 등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고, 향후 3년간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하지만, 쉼터시설, 병영시설,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 등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위원회는 단계적으로 이들 분야가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3.3.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심각한 인권침해 우려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현장 긴급 상황에 대한 조치, 인권침해 상황 해소·완화 노력을 기울이는 활동을 강화할 나갈 것이다. 또한 진정제기자체가 어려운 다수인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 3.3.3. 기획조사(실태·방문·직권 조사) 기능 활성화

그동안의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영역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도별 기획조사 계획을 별도로 수립·실시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이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충분한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던 군대내 인권,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의 경우 기획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권침해 심각성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개선 권고하도록 한다.

#### 3.3.4. 업무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강화

인권보호와 그 수준의 향상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피진정기관들의 긍정적 변화를 통하여 이룩된다. 근래, 법무부 인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전담 부서와의 협조는 물론이고, 영역별로 인권 관련 진정사건 해결 과정이나 인권위 권고 후 그 이행과정에서 관련 피진정기관 및 필요시 인권단체까지 포함된 실무급 협의·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형식적인 수용이나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수용, 변화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4.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4.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 4.2.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의 구축·시행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4.2.2. 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4.2.3.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4.2.4.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 4.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4.3.1.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실시 지원

4.3.2.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 전략계획 수립 및 실시

### 세부목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위원회가 2005년도에 전국 15세 이상 성인남녀 1,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으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응답자의 5.3%만이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가 매우 적다고 응답했다. 이 통계수치는 인권 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사회구성원들이 체계적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인권교육의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인권교육 활성화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정책수립과 교육 실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인권교육 실태조사로 인권교육기회 보급의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교육 관련 연구 과제 개발 지원으로 정책 입안 근거 마련 및 인권 교육 연구 및 활동기반을 구축 한다

### 4.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인권교육 전문가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수립 및 인권교육 활동에 관한 열린 협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조직 구성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메일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인권교육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전문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한다

### 4.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 인권교육 실시 및 진흥을 위해 주기별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이 정착·활성화 될 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UN에서도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한 다음 시기별로 인권교육 집중강화 영역을 선택하여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인권교육원 설립이나 인권교육법 제정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교육기본 계획 수립을 각 해당기관에 권고 한다

## 세부목표 4.2.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의 구축 및 시행

인권교육 실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속적, 체계적인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고 시급하다고 한다. 대상별, 영역별, 주제별,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인적 및 물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천계획

####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것은 UN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 및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7)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로 제안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각급학교에 인권교육과정을 필수과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급학교별 인권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학급학교에서 인권교육 과정이 운영되도록 협의·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모니터링 하며,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속에서 인권을 체험하도록 인권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법집행 공무원, 군대와 같은 특수기관,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다수인 시설 종사자, 교원, 우리사회의 여론 지도층(언론인, 예술인, 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는 UN 인권교육10개년계획(1995-2004)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특히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경우 인권교육 이수를 필수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입직교육 및 각종 직무 연수 프로그램에 인권교육과정이 설치되고 운영되도록 협의 지원 하고, 인권교육 우선집단, 취약집단을 위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지원 한다

#### 4.2.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은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 인권적

인 교육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을 다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전 프로세스가 인권적인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하고, 인권교육다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상자와 교육자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우선 집중대상별, 수준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자(trainer's train program)를 교육하는 과정을 운영 한다

### **세부목표 4.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국민들의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친화적인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홍보활동은 국민들의 인권의식향상,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이를 통한 위원회의 위상강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전략화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실천계획**

### **4.3.1.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캠페인 실시 및 지원**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및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인권 침해 현장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통로 및 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반 국민대상 혹은 인권취약계층을 위해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이버공간 활용)를 개발·보급하고, 인권 현안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 활동(예 단체와의 캠페인 행사, 어린이인권위원회, 모의인권국민위원회)을 관련자들과 협력하여 조직하여, 인권옹호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 4.3.2.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계획 수립 및 실시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 홍보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그동안 다양하게 이뤄져왔던 위원회의 홍보활동을 하나로 모아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또한 그동안 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이뤄온 구체적인 변화, 이를 통해 달라진 개개인의 삶에 중점을 두어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국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위원회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또한 위원회의 공간을 중요한 홍보 도구화하여 위원회를 방문하는 누구든지 방문만으로도 위원회의 활동을 이해하고, 인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 5.1.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5.1.1.위원회의 비전과 역할인식 공유
- 5.1.2.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3.영역별 기능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5.1.4.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 5.1.5.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 5.2.위원회의 투명성·접근성 제도

-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 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 수렴 체계 확립
- 5.2.3.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 5.2.4.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 5.3.국내외적 협력체계 강화

- 5.3.1.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력 발휘
- 5.3.3.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계 강화
- 5.3.4.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 세부목표 5.1.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부환경과의 적절하고 생산적인 긴장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위원회가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은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위원회법상 명시된 역할과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위원회의 각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수정, 보완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지위 및 권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5.1.1.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인식 공유

위원회의 지도력은 위원회의 장기적인 비전과 이에 대한 위원회 및 구성원들의 역할을 제시하고 조직구성원의 합의와 헌신을 이끌어내어 위원회의 내부적 지지기반을 튼실히 하고, 이러한 내부적 단합된 지지기반을 토대로 대외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리더십은 위원회 정체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며, 해마다 예산수립 전에 워크숍 등을 통해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직원들이 함께 위원회의 비전을 검토하고,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리더십 전략 워크숍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회 리더십 및 구성원 전체가 조직의 비전 및 차년도 사업 방향 및 중점과제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도출하고, 구성원의 헌신과 역량 집중을 유도한다.

### 5.1.2.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 5.1.3. 영역별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위원회는 금년 하반기에 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국·과 체제를 팀 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새로 구성될 팀은 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진정사건의 처리, 관련 정책의 수립·권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수행하는 자기 완결적 성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팀 제도의 성공적으로 정착으로 사건처리와 정책의 연계 등 영역별 기능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5.1.4.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

구성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표준화 모듈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업무상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공동체(CoP: Community of Practic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업무의 효율성, 계속성,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효율적 업무 매체로서 매뉴얼을 개발 하되, 종래의 직무별 통합 매뉴얼은 물론 사건유형별 매뉴얼과 같은 업무유형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2006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핵심역량요소를 도출한 후,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훈련 시행을 총괄할 교육전담기구로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단없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한다.

### 5.1.3. 운영체제 구축

위원회가 무소속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시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독립된 인권전담기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실상부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관행적 운영 체계를 정비하도록 한다. 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을 검토,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검토하고, 대정부 관계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의 독립적인 청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5.1.4. 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인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위원회에 대한 지지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지역사무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지역의 인권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연락체계 활성화, 지역사무소를 통한 해당 지자체 및 지역NGO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지역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NGO와의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의 인권현안에 대해 토의하고, 위원회, 지역사무소, 인권NGO 및 시민사회단체 각각의 역할을 인식, 조정을 통해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이후 대구

등 주요거점 도시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무소 신설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지역의 인권문화 확산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체계(MOU 등)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에 자극을 촉발한다.

## **세부목표 5.2. 위원회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외부기관(예: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 **실천계획**

####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위원회의 대·내외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보하여 대국민, 전문가 집단,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활동, 위상, 이미지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수렴체계 확립**

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

을 잘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의 공보활동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차원의 전방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언론대상 간담회 및 브리핑 수시운영, 웹진과 메일링 리스트의 효과저인 활용, 쌍방향 홍보물 제작, 국민참여 프로그램(명예 인권위원, 시민인권조사관, 청소년 인권모니터단, 위원회 평가단 등)을 개발 운영하고자 한다.

### 5.2.3.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무소속·독립 국가기구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스스로 조직 구성원 개개인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윤리성 및 투명성을 요구, 통제하여 외부기관(예: 감사원)의 감독 및 통제를 뛰어넘는 수준의 윤리성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성 확보 기반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리강령을 마련하여 구성원으로서 인권적 교양과 품위 유지, 업무 태도와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고양하고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일원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원회 또는 구성원들의 윤리성에 대한 도전이 심할 수 있는 대외활동에 있어서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대외활동을 보

장한다.

#### 5.2.4.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부서 간 업무의 효과적인 연계와 개인이 소장한 정보를 조직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의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아울러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식관리시스템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 분류 카테고리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세부목표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위원회의 역할은은 위원회의 독자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 및 지방 정부, 인권·시민사회 단체, 시장, 국제사회 등과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기관과의 상시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협력체제 강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집단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의 효과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지역화, 세계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

###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국제사회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국내의 인권현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국제활동을 통한 국내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 인권이슈의 국내 소개 및 활발한 인적교류 활동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먼저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UN 및 UN관련 기구,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모여있는 제네바 또는 뉴욕에 연락관(international Liaison)을 파견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국내의 인권현안을 국제화하도록 하고, 주요 국제기구에 위원회 직원을 인턴으로 파견하여 주요 인권 이슈영역의 흐름, 주요 기관들의 동향, 인권정보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력 발휘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도, 정책적 체계 확립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국내 인권 현안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인권·시민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와 NGO간의 역할분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또한 향후 차별행위와 관련한 위원회 진정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성별,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고용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위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차별 예방 지침서(guideline) 개발,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차별 예방 교육 실시, 인권 친화 기업 발굴 및 선정, 차별예방협의회 구성 등을 계획하고자 한다.

### 5.3.3.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대학, 인권관련 학계와의 연구용역 사업 추진 및 인권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위원회와 인권관련 연구 그룹들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위원회의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발전시킨다.

### 5.3.4. 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선두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위상을 증진한다. 국내의 인권 현안 가운데 외국 NI들과 공동 추진할 만한 이슈(예 : 인신매매, 청소년 노동권 등)를 선정하여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문서번호	국내협력과
보존기간	3년
보고일자	2005. 3.
공개여부	공개

담당	과장	국장	사무총장	위원장
협조				

##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결과 요약 보고

2005. 3. 15.

교육협력국  
국내협력과

##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요약)

### 1.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5. 3. 11(금) 15 : 00 ~ 19 : 00, 배움터1·2
- 프로그램 내용
  - 업무소개 :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및 질의 응답
  - 분야별 정책간담회
    - <1세션 ; 인권정책분야> : 인권위법 개정, NAP, 인권상황실태조사
    - <2세션 ; 차별조사분야> :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차별사안 발굴방안
    - <3세션 ; 인권침해조사분야> :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 <4세션 ; 교육협력분야> : 인권단체와의 협력·지원사업, 2기 인권 교육 추진방향

### 2. 참석단체

- 총 48개 단체, 68명 참석(지방 15개단체 18명, 기자 제외)
  - 부산(7명), 광주(2명), 여수(1명), 대전(1명), 울산(1명), 전주(5명), 제주(1명)
  - ※ 참석단체 및 참석자 현황 : <붙임2> 참조

### 3. 분야별 단체의견 개선 내용(발췌요약) : <붙임1> 참조

### 4. 향후 조치계획

- 분야별 정책간담회에서 개선된 단체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국별로 세부 조치계획을 마련, 관련업무 향후 추진시 적극 반영
  - 단체의견에 대한 검토 분석은 국별로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실시
  - ※ 분야별 단체의견에 대한 향후 세부 조치계획은 각 국별로 별도 보고 예정
- 국내협력과는 각 국 단체의견 조치계획을 종합취합 후, 단체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먼저, <요약>보고사항을 홈페이지 게재(정책간담회 미참석단체도 정보공유 가능) 및 간담회 참석단체에 감사 서한 송부(사무총장명)

**<제 1세션> : 「인권정책분야 분야」 단체의견 개진 내용**

**【국가인권위법 개정추진】**

1. 인권영향평가제 도입과 관련,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인권 위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도입 연기 필요
2. 인권위원 남녀 성비구성 문제는 인권위원의 남녀 성비를 10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파리원칙에서 정한 인권위원구성의 다양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음
3.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와 관련, 장애계에서는 차별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에 반대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강한 시정명령 기능을 가진 별도의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의 설립을 원함
  - 이를 위해 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4.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인권위 단일화 문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기구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함
  - 인권위에 인정보호기구를 설립할 수도 있으나, 인권위가 현재도 업무가 많은 데 개인정보 침해시정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업무량이 과중될 것으로 생각됨
5. 의문사 조사와 구제와 관련해서는 의문사에 대한 조사·구제업무를 인권위가 수행하는 데 찬성
  - 특히 균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1. NAP 구성과 관련, 현재 정책과제 내용만 있고 이행체계와 전략은 빠진 상태임. NAP 권고안에는 이행상황을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도 포함해야 함(이창수 새사회연대)
  - ⇒ 청와대의 조정으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위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항이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로 이해하고 있음

2.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가 인권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운영할 생각인가, 아니면 정부의 수용수준에 NAP 권고 수준을 맞추는 절차로 이용할 생각인가(이창수 새사회연대)
  - NAP 추진을 위해서는 기관간 공동협약 체결로 접근하든가,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같은 데서 계획을 내도록 해도 가능 하다. 그렇게 추진하지 않은 마당에 이제 필요한 것은 인권위의 결단이 아닌가
    - ⇒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는 권고 이후 모니터링과 견인의 장치로서도 의미가 있음
3. 추진은 못 박은 일정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세계 인권선언기념일 정도를 시한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은 좋겠음( )
  - ⇒ 일정상 어려움은 있으나 상반기에 권고안이 나가지 못하면 정부 예산편성 절차상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
4. NAP 총론이 부재함. 권고안에 추진방향, 현재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대한 분석 등을 담은 총론이 없음. 이는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에 기초한 과제 제출의 기본 토대에 해당됨(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 ⇒ 권고안에는 NAP의 목표, 추진방향, 인권상황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된 총론 영역이 있으며, 이 내용은 4월중 인권단체워크숍에서 논의될 예정임
5.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과 관련, 현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 민간부문 대표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 인권의 주요 부문·의제별 대표성이 확보되었는가. 만약 보완해야 한다면 추가할 여지는 있는가( )
6. NAP 추진 일정과 관련, 작년 하반기 이후 실종되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개시된 느낌을 받고 있음. 여러 영역의 간담회가 2주간에 걸쳐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강행의 인상을 줌. 단체 입장에서는 안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계속 참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며, 일정 변경이 가능한가( )

⇒ 간담회 일정은 영역별 심층논의를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음. 다음주 일정은 변경하기 어려우나 20일 이후 일정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변경할 수도 있음

### 【인권상황 실태조사】

1. 연구용역 지원신청 자격과 관련,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무엇보다 현장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을 수 있는 실태조사가 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기존 단체의 참가가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는 법인단체,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자격 기준이 까다로움(예: 성적소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 인권위 직원의 인권감수성과 관련, 설문조사 등을 할 때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을 충분히 고려, 설문조사를 했으면 함
  - 설문조사 문항에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항목이 있는지를 검토(예: 국민인권의식조사)
3. 국정원, 검찰, 법원, 경찰서 유치장 등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가 필요함

### <제 2세션> : 「차별조사 분야」 단체의견 개진 내용

#### 【차별사안 발굴 방안】

1. 조사관 전문교육은 현장활동가, 상담원 등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하여 실시되길 바람
2. 사회권분야의 차별행위관련, 차별사유별 개별적 권고보다 개념을 확장하여 정책적 권고를 함으로써 차별행위 예방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경제자유구역법 내 거주자들의 권리침해는 다른 지역과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임
3. 진정사건이 적은 분야는 왜 진정사건이 적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필요
4. 경제적 약자 차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차별 등에 대한 관심 제고 요망
5. 기타 성희롱 사건의 범주, 각하, 기각 사유가 낮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 필요
6. 현장의 감동과 아픔을 전해 듣고자 함.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조사에 대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람(사무총장 마무리 말씀)

**<제 3세션> : 「인권침해조사 분야」 단체의견 개진 내용**

**【진정사건 처리업무 간소화 방안】**

1. 처리 기간 단축에 동의. 다만, 처리기간이 지연될 경우 국민 불편 초래하므로 중간 통보 반드시 필요(전준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인권침해 행위 조사시 인권단체 자문 필요(신속히 대응하는 데는 인권단체가 유리하여 상세하게 파악 가능)
2. 각하 사건이 70%를 차지하는데 법적 요건이 안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안은 정책 권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문제 제기 필요(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3. 익명, 가명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직권조사 실시 필요(김학철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 반복 진정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알아봐야 함
4.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창구 필요(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 변호사,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
  - 누적된 진정처리를 위해 특별처리기간 설정(타부서 지원)
5. 인권위 방안은 행정편의주의이므로 조사관 확충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이광영 부산인권센터)
  -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으며, 결정통보와 아울러 진정인이 향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필요
6. 이주 노동자 진정처리기간이 너무 길다(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 조사관 전문화와 자기 책임성 확보를 위해 결정문 필요
  - 인권단체와 협력 시스템 필요
7.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검토(오영경 새사회연대)
  - 조사관 확충, 특별처리기간 필요
8. 단문 의결서에 핵심적 사항만 기재(정양희 서울여성노조)
9. 인권위 자체 노력이 우선. 쓸데없는 절차는 간소화 되어야 함(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제 4세션> : 「교육협력 분야」 단체의견 개진 내용**

**【인권활동가 교육프로그램】**

1. 인권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사업명칭을 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 변경, 명확화 필요(이창수 새사회연대)
  - 명칭 잘못 이해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 활동가를 교육시키는 오해 발생
2. 단체활동가 교육프로그램 지원방식도 인권위가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 단체들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역할 필요(이창수 새사회연대)
3. 보건의료관련 및 성적소수자 단체는 활동가 교육이 필요함(부산 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건강세상네트워크)
  - 소규모 단체로 활동가간 상호 정보공유 및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나, 제정형편이 취약해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4. 인권피해자들의 「인권활동가 학교」 개설 필요(진관 불교인권위원회)
  - 노동자·농민·빈민·학생 등 수용시설 경험자들이 그 지역에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인권활동가 교육 실시 필요
5. 단체활동가 인권교육을 제2기 인권교육 분야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지원 체계 마련 필요(박김수진 레즈비언인권연구소)
6. 인권활동가 교육에 대해 지역별·분야별로 단체들의 수요파악 실시 필요 및 수요파악 방식에 대해 좀더 연구 필요(배경내 인권교육네트워크)
  - 단체의 자생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필요

**【지역 인권세미나 개최】**

1. 지역인권세미나 개최 형식과 명칭에 대해 재고 필요(이창수 새사회연대)
  - 세미나 또는 토론회 형식 등 개최방식 고민과 지역에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인권위가 주도하지 않고 단체들과의 협력 필요
2. 지역 인권세미나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 개최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토론회 방식도 고려(배경내 인권교육네트워크)

### 【 인권교육 법제화 】

1. 인권교육의 역량에 대한 고려도 필요(배경내 인권교육네트워크)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가 우선순위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교육 역량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 학교 및 군대 인권교육 】

1. 학교 폭력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전교조, 교총, 인권활동가, 교육부 등과 만나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진판스님)
2. 학교 인권교육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함. 또한 일상적 차별감수성 함양 필요(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 학교 인권실태조사 및 교과서, 교사지침서 내용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중요함(성적소수자 단체)
4. 학교 인권교육의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중요(배경내 인권교육네트워크)
5. 교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필수화가 필요(여수YMCA)
  - 시민단체의 학생 대상 인권교육실시에 대해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등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 「2005 인권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참석단체 현황

※ ●는 지방단체 표시임

연번	단 체 명	참 석 자	비 고
1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상덕	
2	경실련 통일협회	김삼수	
3	●광주 YMCA	김현	
4	국군 사상자유가족연대	정재영 사무처장	
5	군경의문사진상규명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서석원	
6	●대전 YMCA	황성미	
7	대한변호사협회	이국재 인권위원장	
8	동성애자 인권연대	김정숙, 락이경	
9	레즈비언 인권연구소	박김수진, 수연	
10	●무등 청소년회	강병연 이사장	
11	민가협	임기관, 조순덕,이영	
1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강근 간사	
13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기 날개달기	최현제, 조옥관	
14	●보배 복지재단(익산)	송정근, 양우천	
15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김경미	
16	●부산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센터	김혜정	
17	●부산 여성폭력예방상담소	김문숙 소장	
18	●부산 인권센터	이광영 사무처장 하진호	
19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열 시민권리팀장	
20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민정	
21	불교 인권위원회	진관	
22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오영경	
23	서울 여성 노조	정양희	
24	●여수 YMCA(청소년인권센터)	장혜옥	
25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협의회	권오현	
26	●울산 인권운동연대	박영철 사무국장	
27	원불교인권위원회	김치성 간사, 정상덕	
28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김학철	
29	인간의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위한 모임	채희성	
30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장영, 최철규	

연번	단 체 명	참 석 자	비 고
31	인권운동사랑방	박태균 최은아 김영원 배경서	
3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목미정 간사	
33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최성자 간사	
34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공동집행위원장 박나래	
35	• 전주여성의전화	노명희 대표	
36	• 제주 YMCA	김경이	
37	진보네트워크	지음	
38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택진 사무국장	
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신희남 간사	
40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케이 정재영 휘린 김김찬영	
41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과장	
42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손영주	
43	한국여성민우회	홍지명 최진협 박정옥	
4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임재련	
45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인권운동센터)	신연숙	
46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양혜우 대표	
47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48	환경정의	이진우 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트라넷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 http://intra.humanrights.go.kr/ekp/ekp\_main1.jsp

국가인권위원회

SSO > 로그아웃 > 홈페이지 > 사이버인권교육 배움터 > 개인화면 > 환경설정 > 다운로드 > ID/비밀번호 찾기 > 사이트맵

우편/팩스 | 아우블터 | 전자결재 | 행정지원 | 진정처리 | 인권자료실 | 지식관리 | 검색

Home > 아우블터 > 게시 > 직원한마당

작성 삭제 목록인쇄 상세검색

번호	제목	게시자	조회수	게시일	첨부
<input type="checkbox"/> 3231	RE:RE:조직개편안에 대한 인권침해조사2과 검토의견	공감2	143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47	RE:조직개편안에 대한 인권침해조사2과 검토의견	공감3	94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28	안녕하세요	김동식	151	2005.09.14(수)	
<input type="checkbox"/> 3245	RE:조직개편안에 대한 인권침해조사2과 검토의견	익명성..	59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27	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사무총..	374	2005.09.15(목)	0
<input type="checkbox"/> 3233	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분위기..	244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41	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홍희자	134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36	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NGO만..	165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34	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직원2	208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42	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박은조	224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49	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분위기..	183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52	RE: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마자수	155	2005.09.15(목)	

3229건의 문서가 검색되었습니다. [ 1 2 3 4 5 6 7 8 9 10 ] >>

국가인권위원회 인트라넷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 http://intra.humanrights.go.kr/ekp/ekp\_main1.jsp

국가인권위원회

SSO > 로그아웃 > 홈페이지 > 사이버인권교육 배움터 > 개인화면 > 환경설정 > 다운로드 > ID/비밀번호 찾기 > 사이트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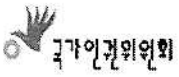
우편/팩스 | 아우블터 | 전자결재 | 행정지원 | 진정처리 | 인권자료실 | 지식관리 | 검색

Home > 아우블터 > 게시 > 직원한마당

작성 삭제 목록인쇄 상세검색

번호	제목	게시자	조회수	게시일	첨부
<input type="checkbox"/> 3251	RE: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박은조	142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50	RE: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익명성..	222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53	RE:RE:RE:RE:업무전락팀 운영에 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	ㅇㅇㅇ	155	2005.09.15(목)	
<input type="checkbox"/> 3226	다면평가안에 대한 설명회 일정 및 장소 변경(17:00 배움터1)	인사TF	94	2005.09.14(수)	
<input type="checkbox"/> 3225	조직개편안 및 간담회 관련 안내	조국현..	78	2005.09.14(수)	
<input type="checkbox"/> 3204	송문모범 12시에 마감하겠습니다	홍은파	75	2005.09.14(수)	
<input type="checkbox"/> 3222	다면평가안에 대한 설명회(14일 17:40 배움터1)	인사TF	45	2005.09.13(화)	
<input type="checkbox"/> 3221	조직개편안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조국현..	177	2005.09.13(화)	
<input type="checkbox"/> 3230	다면평가안에 대한 의견수렴-인사TF	홍은파	102	2005.09.13(화)	0
<input type="checkbox"/> 3219	다면평가의 말	송	165	2005.09.12(화)	
<input type="checkbox"/> 3223	RE:다면평가의 말	나무그..	75	2005.09.14(수)	
<input type="checkbox"/> 3216	Gami게릴라 필요하신 분	오유진	98	2005.09.12(화)	

1273건의 문서가 검색되었습니다. [ 1 2 3 4 5 6 7 8 9 10 ] >>



- 우편/팩스
- 아우터
- 전자결재
- 행정지원
- 진정처리
- 인권자료실
- 지식관리
- 검색

아우터

게시물 내용

Home > 아우터 > 게시 > 직원한마당 > 게시물 내용

- 저장
- 인쇄
- 목록보기
- 의견추가



자유게시판

최근 365 일 검색, 일일게시

- 자유게시판
- 직원한마당
- 생활정보
- 좋은글들

저도 단체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도 원활한 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단체활동이었을 때의 저의 활동과 공무원으로서의 저의 활동은 다르다고 보고, 제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 차이를 인정하고 제가 인권위원회 스태프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과정이 많은 인권, 시민단체 및 진보적 활동가들의 노력이라 하더라도 인권위원회와 시민, 인권단체는 엄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다시말해 양 조직간 내외부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부 논의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인권단체를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요. 단체직원들간 회의 모두 공개하시나요?

발전기획단은 인권위의 현안 및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위 직원들이 바로 당사자이고 가장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단체들의 참여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운동 사랑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부자로서의 참여가 아닌 자문 또는 의견개진으로서의 참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가 하나의 조직이고 인권운동 사랑방 스태프가 인권위 내부 스태프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정도의 조직간 내외부에 대한 혼동이라면 인권위 직원이 단체활동가 겸직을 해도 되겠네요?

정보공개 저도 많이 요구했고 그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요구가 확정되지 않은 논의과정까지 모두 실시간 공개해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직의 위상과 형태를 무시한 양 조직간 경계를 없애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인권, 시민단체와 국가기관간 조직 위상 및 형태를 혼동하는 것이 진정한 진보가 마음을 끌지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은 자기 위상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제1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조연과 협조와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비판은 언제든 받을 준비 하고 있고 잘못된것 많아서 고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니지요, 숙고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일하고 있는 배경내입니다.

저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측으로부터 발전기획단 산하 업무전략기획팀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단체 논의를 거쳐 업무전략기획팀 외부위원으로 결합해 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인권위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으시고 기획단 산하 세 개의 팀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발전기획단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의견을 여쭙 바가 있어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 1. 발전기획단 운영방식을 보며 든 생각들

발전기획단은 2기 인권위의 방향성과 발전 전략을 틀 짓게 될 매우 중요한 단위입니다. 논의의 중요성만큼이나 외부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에 결합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은 인권위로부터 개별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아 결합한 자문단일 뿐, 결코 인권진영으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아 결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체 발전기획단 진행방식이나 일정을 살펴보니, 현 인권위측에는 인권진영의 의사를 지속적·전폭적으로 수렴하여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명확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각 팀의 초안이 거의 완성된 이후에 인권단체와의 간담회가 한번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인권단체 의사 수렴 과정이 형식화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이 인권진영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을 대상화하면서 이루어지는 인권위의 발전은 전체 인권진영의 발전이라고 보기 힘들 테니까요. 더구나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는 문제, 2기 인권위의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문제 등 발전기획단에서 수립하게 될 계획 가운데 어느 것도 전체 인권진영의 힘을 모아내지 못하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민감하고도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그만큼 발전기획단은 전체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지를 모아내기 위한 과정을 실질적으로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외부위원들이 함께 워크숍 개최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이런 고민 끝에, 저희는 인권위측에 '2기 인권위 발전과 방향성 정립을 위한 인권위·인권단체 공동 워크숍'(가안) 개최를 요구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태국 인권위원회의 경

우에도 1박2일간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 인권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자신의 업무전략을 기획하는 모범적인 길을 걸었다고 하는군요.

## 1)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

### ① 인권진영 의사의 실질적인 수렴

: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 2-3시간 가량 진행되는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사 수렴 절차에 그치기 쉽습니다.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1박2일 혹은 하루 전체를 비워 진행되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② 광범위한 합의 형성

: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할 때,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은 인권위만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인권진영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막바지 단계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인권단체 간담회를 연다면, 이는 인권단체들을 또다시 객체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권단체들로부터 완벽한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 개최는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 ③ 논의의 풍부화와 심화

: 현재 인권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안이 모두 확정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만 발전기획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안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출되었는지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후 논의과정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워크숍 개최 시기

- 현재 인권위측은 11월초까지 안을 확정하고 2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맞춰 발전기획안을 발표하는 일정을 갖고 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인권의 날에 맞춰 굳이 이벤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12월말까지 시기를 늦춰 논의를 좀더 충실히 가진 후, 200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기본 논의자료가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발전기획단이 담당해야 하며, 10월은 이 자료를 마련하는 시기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워크숍 개최 시기는 11월초가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 11월초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발전기획단은 발전기획안을 마련하고,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한번 더 거친 다음 인권위 내부 결정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여러 외부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저희 뜻에 공감해 주시면 외부위원 전체 이름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각 팀 회의자리에서 공동으로 제안해도 좋을 듯 한데요.

6일(목) 오전까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해서 저희 행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 <참고> 발전기획단 전체 구성

##### 1. 업무전략기획팀

-내부: 박찬운 정책국장(팀장), 심상돈 과장, 사무관 강명숙, 이수연, 임송(간사)

-외부: 김종서(배재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이창수(새사회연대), 장주영(변호사), 조효제(성공회대)

##### 2. 위상강화기획팀

-내부: 김형완 상담센터소장(팀장), 김성준 과장, 사무관 김정린(간사)

-외부: 서경석(인하대), 송원찬(다산인권센터), 이재명(참여연대), 임지봉(건국대), 하승수(변호사)

##### 3. 역량강화기획팀

-내부: 나영희 교육협력국장(팀장), 심민석 자료실장, 박숙미 전문위원(간사)

-외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이대훈(성공회대), 정경수(순천대), 최희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상희(건국대)



#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3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web-site: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mailto:humanrights@sarangbang.or.kr)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제목 :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 초청 워크숍 개최 제안

날짜 : 2005.10.6

안녕하십니까?

귀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외부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드릴 바가 있어 글을 전합니다.

## 1. 발전기획단 추진 일정에 대하여

- 현재 발전기획단에서는 각 팀별 초안이 나온 이후 11월초 인권단체와의 간담회와 전원위원회 의 결을 거쳐 12월 10일까지 발전기획안을 완성한다는 일정 하에 업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인권단체와의 간담회가 당일 시간상의 제약이나 사전 문제의식 공유 미흡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전기획안 마련 절차에서도 이와 유사한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현재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권전문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인권위로부터 개별적으로 참여 요청을 받아 결합한 것일 뿐, 인권진영으로부터 대표성을 위임받아 결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 저희는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이 인권진영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계획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들을 객체화하면서 이루어지는 인권위의 발전은 전체 인권진영의 발전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발전기획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 2기 인권위의 핵심 추진과제 설정 등은 전체 인권진영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실현되기도 어렵고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민감한 과제들입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도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전체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 2. 민간 초청 워크숍을 제안합니다.

- 이런 고민 끝에, 저희는 귀 발전기획단에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 초청 워크숍(가안) 개최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태국 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1박2일간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 개인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자신의 업무전략을 기획하는 모범적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 1)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

### ① 인권진영 의사의 실질적인 수렴

: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 2-3시간 가량 진행되는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사수렴 절차에 그치기 쉽습니다.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1박2일 혹은 하루 전체를 비워 진행되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② 광범위한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할 때,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은 인권위만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인권진영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현재 계획대로 막바지 단계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인권단체 간담회를 연다면, 이는 인권단체들을 또다시 객체화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이 인권단체들로부터 완벽한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최대한의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상태에서 마련되어야 이후 실질적인 추진 동력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워크숍 개최는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 ③ 논의의 풍부화와 심화

: 현재 인권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안이 모두 확정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만 발전기획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안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출되었는지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권위원들과 사무처, 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후 논의과정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워크숍 개최 시기

- 현재 귀 발전기획단은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맞춰 발전기획안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일을 굳이 인권의 날에 맞춰 이벤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12월말까지 시기를 늦춰 논의를 좀더 충실히 가진 후, 200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워크숍을 개최할 경우, 기본 논의자료가 충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발전기획단이 담당해야 하며, 10월은 이 자료를 마련하는 시기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워크숍 개최 시기는 11월초가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 11월초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발전기획단은 발전기획안을 마련하고,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한번 더 거친 다음 인권위 내부 결정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2기 인권위의 좌표가 될 발전기획안이 내실있게 마련되고 인권단체의 지지를 바탕으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발전기획단 운영이 인권단체와의 실질적 협력을 구축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끝)

#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가칭) 제안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전 성원  
발신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업무전략팀 외부위원)  
날짜 : 2005.10.11

- 안녕하십니까? 발전기획단 업무전략기획팀 외부위원으로 결합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입니다. 발전기획단은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단위입니다. 따라서 발전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닐 것입니다.

-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하여 인권위로부터 위촉받은 외부위원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권위가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등 '자문'하는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발전기획단에 참여하지 못한 인권단체 및 개인전문가들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인권진영과 인권위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입니다. 이러한 '자문'과 '매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외부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부담감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고민을 하던 가운데, 현 발전기획단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2기 인권위의 좌표가 될 발전기획안이 내실있게 마련되고 민간 인권진영의 지지를 바탕으로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며, 나아가 이번 발전기획단의 운영 과정이 민간 인권진영과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각 팀과 전체 발전기획단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1. 발전기획단 추진 일정에 대하여

- 현재 발전기획단은 각 팀별 초안이 나온 후 인권단체와의 간담회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0일까지 발전기획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추진 일정으로는 민간 인권진영의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높습니다. 간담회 이전에 민간 인권진영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여유와 계기가 없을 뿐더러, 간담회 당일에는 2~3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간담회 이후에 민간 인권진영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에 수십 차례 진행되었던 인권위와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를 보았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게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이 민간 인권진영의 합의와 지지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전체 인권진영의 발전으로



귀결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전체 인권진영의 힘을 모아내지 못한다면, 2기 인권위가 향후 3년간 주력해야 할 핵심 과제는 물론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문제, 인권위의 전문성과 신뢰구축 등의 문제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감안할 때,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전체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2. 민간초청 워크숍을 제안합니다.

- 이에 따라 「2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가안) 개최를 제안합니다. 민간초청 워크숍은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발전기획단 외부위원은 물론 발전기획단에 참여하지 않는 인권단체 및 개인전문가도 대거 참여하여 2기 인권위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대국 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1박2일간 인권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거쳐 자신의 업무전략을 기획하는 모범적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 1) 워크숍 개최의 필요성

#### ① 인권진영 의사의 실질적인 수렴

- 지금까지 전례에 비추어 2~3시간 가량 진행되는 인권단체와의 간담회는 형식적인 의사수렴 절차에 그치기 쉽습니다. 인권진영의 고민과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박2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 필요합니다. 불가피하게 1박2일 일정이 불가능하다면, 하루 전체를 비워 워크숍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② 광범위한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위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치를 고려할 때, 2기 인권위의 방향과 전략은 인권위만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 인권진영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이 인권단체들로부터 완벽한 동의를 얻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상태에서 마련되어야, 이후 실질적인 추진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워크숍 개최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③ 논의의 풍부화와 심화

- 현재 추진 일정대로라면 인권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안이 모두 확정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만 발전기획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위원들은 발전기획안이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제출되었는지를 풍부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에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지를 모아내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후 논의과정이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 ④ 팀별 문제의식의 교류

- 현재 발전기획단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업무전략팀, 위상강화팀, 역량강화팀의 논의 과제들은 서로 중첩된 부분들이 있는 만큼, 팀별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상승 발전시켜야 더 나은 발전기획안

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팀이 모두 모이는 워크숍에서 팀별 문제의식도 교류하고 민간 의사를 수렴하여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면, 발전기획단에 부여된 임무를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 2) 워크숍 구상

### ① 개최 시기: 11월초

- 현재 발전기획단은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맞춰 발전기획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인권위의 발전기획안을 마련하는 일을 굳이 인권의 날에 맞춰 이벤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12월말까지 시기를 늦춰 좀더 충실히 논의를 한 후, 200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12월 10일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민간초청 워크숍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들이나 민간 인권진영에 워크숍 개최를 알리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워크숍 개최 시기는 11월 초(4~5일 혹은 5~6일)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10월 한달 동안 각 팀은 워크숍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 논의자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워크숍 이후에는 워크숍에서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각 팀에서 초안을 확정하고, 발전기획단 전체 안을 마련한 다음, 인권단체와의 추가 간담회를 거친 이후, 인권위 내부의 의결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워크숍 개최는 늦어도 11월 초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② 초청 대상 및 실무

- ▶ 인권위원(특히 상임위원 참여 독려), 인권위 직원, 발전기획단 구성원 등 50명
- ▶ 민간 인권단체 및 인권전문가(인권강사단, 인권위 정책자문위원 포함) 등 50명

- 100명 규모의 대규모 워크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워크숍 개최 전에 참가자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발전기획단은 워크숍 개최 일정을 빨리 확정하고, 민간 인권진영에게 바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 워크숍은 인권위가 민간 인권진영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인권위 재정에서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워크숍이 처음 열리는 것이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100명 규모의 행사비용을 모두 인권위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면,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최소한의 참가비를 받음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나누고 좀더 책임있는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③ 워크숍의 주요 내용(안)

- 개요 :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와 팀별 주요 임무
- 책임 발제 : 발전기획안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발전기획단 단장)
- 간략한 질의와 토론

■ **쟁점 워크숍(1) : 2기 인권위 부문별 우선 과제**

- 자유권, 사회권, 사회적 약자·소수자 등의 주제별 토론향을 열고, 참가자들 각자가 2기 인권위 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으로 찾아가 논의하는 방식.
- 각 토론향에서는 그 부문이 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부문 내에서 다시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세부 과제를 뽑아냄.
- 분임 토론이 끝나면, 토론 결과를 총화하고 전체 논의를 거쳐 우선과제에 관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함.
- 전체 논의를 거친 다음, 간략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문별 우선순위를 참가자 각자가 비중별로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 **쟁점 워크숍(2) : 2기 인권위 기능별 우선 과제**

- 2기 인권위가 인권전문옹호기구로서 전문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별로 토론향을 열고, 참가자들 각자가 2기 인권위 우선과제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으로 찾아가 논의하는 방식.
- 각 토론향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구축 △국가기관에 대한 인권적 통제 강화 △회색 영역의 인권 의제 발굴과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향상 △국내외 인권진영과의 협력 강화 △찾아가는 인권위(인권위 업무의 현장성 강화) △범국민적 인권의식 고취(인권지침 공표, 인권교육 강화, 홍보 강화) 등 2기 인권위에서 우선 강화되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와 그 근거를 논의하고,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세부과제를 뽑아냄.
- 이때, 개설되는 토론향은 업무전략팀이 총괄하고, 워크숍 당일 참가자들이 제안하는 추가 토론향이 개설될 수 있도록 열어 둠.
- 분임 토론이 끝나면, 토론 결과를 총화하고 전체 논의를 거쳐 우선과제에 관한 최대한의 합의 도출.
- 마찬가지로 전체 논의를 거친 다음, 간략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문별 우선순위를 참가자 각자가 비중별로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 **팀별 세션**

- 업무전략팀, 위상강화팀, 역량강화팀 세 개의 토론향을 열고,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토론향으로 찾아가 논의하는 방식.
- 각 팀에서 미리 준비한 쟁점사항 토론, 쟁점 워크숍 (1)과 (2)에서 제안된 우선과제에 따른 추가 쟁점사항 토론 등을 진행.
- 예) 역량강화팀의 경우: 인권위 정책역량 강화 방안 + 우선과제에 따른 정책역량 강화 방안  
위상강화팀의 경우: 인권위 권고 실효성 제고 방안
- 토론이 끝나면, 전체 총화하고 추가 의견이나 이견이 있는지 확인.

■ **국가인권위·민간 인권진영 협력 구축 방안**

- 2기 인권위의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국가인권위와 민간의 협력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위 내용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 워크숍은 적어도 1박2일간의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박2일간으로 워크숍이 진행되면, 일정 중에 친교의 프로그램을 넣어 좀더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위와 민간 인권진영과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부족한 구상입니다만, 발전기획단 내부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민간초청 워크숍 개최 계획(초안)

## 1. 워크숍 개최 필요성

- 발전기획안에 인권 전문가/단체 의견을 반영할 필요
-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단체의 워크숍 개최 요구 수렴

## 2. 워크숍 구상

가. 개최 시기: 잠정(11.17)

나. 개최 장소: 미정(여성개발원, 봉도청소년 수련원 등과 협의 중)

\* 여성개발원은 11.14(월), 봉도 수련원은 11.17(목) 가능(가 예약 상태)

나. 참석 대상: 약 100명 정도

○ 위원회 내부: 참석 희망 인권위원 및 직원, 기획단 소속 직원

○ 위원회 외부: 참석희망 인권전문가/단체

\*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 송부 시(10월말~11월 초순예정) 수요조사

다. 워크숍 주요내용(안)

- 1) 발전기획단 설립 취지 및 팀별 주요 임무 소개
- 2) 그동안의 활동 내용 보고
- 3) 쟁점 토론: 2기 위원회의 과제(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방안 포함)
- 4) 팀별 토론: 3개 팀 초안 중심으로 진행

### 3. 소요 예산(추정) : 600만원

- 회의장 임차료 : 50만원
- 식사비 : 100만원(5000원 \* 100명 \* 2식 = 1,000,000원)
- 자료집 제작 : 100만원
- 토론자 사례비 : 250만원(50만원 \* 5명)
- 기타 회의운영비 : 100만원

### 4. 추진 일정

- 가. 워크숍 개최 계획안 마련: 10.26(수)
- 나. 각 팀 초안 확정: 11.7(월)
- 다. 팀 초안 송부 및 참석자 수요조사: 11.8~14(월)
- 라. 기타 행사 준비: 행사 개최 시까지